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189

발의연월일: 2022. 9. 2.

발 의 자:윤준병·김정호·김철민

김성환・양정숙・안규백

오영환 · 이상헌 · 신정훈

이용선 · 민형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, 동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 · 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 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 하려는 것임(안 제88조의5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 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) -----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・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7년 12월 31일까지 -----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1.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.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

<u>12월 31일</u> 까지	받는	배당소득
등: 100분의 5		

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12월 31일
2. <u>2029년 1월 1일</u>